공제금 / 해약환급금 청구서

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

제출일 : 20 년 웤 일

소기업.소상공인공제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금/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며, 공제금 외 에 이 계약에 관하여 본인에게 반환할 금액이 있을 경우 아울러 반환을 청구하오니 아래「공제금 /해약환급금 수령계좌 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	֝֝֝֝֜֜֝֝֝֝֝֝֝֝֝֝֝֝֜֝֝֜֝֝֜֜֜֜֝֡֜֜֜֜֜֜֜֜֜	0 1 1		<u> </u>		
청	①성 명		② 서명 또는 날인*		③주민등록번호	
구 자					⑤계약자(수급관자)와의 관계	
	<pre>④주 소</pre>				⑥휴 대 전 화	

- * 우편 송부시에는 서명 또는 인감날인후 반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**공제금/해약환급금 수령계좌** ※ 계약자 또는 수급권자의 대표자 본인의 개인계좌 이외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.

⑦거래은행	은행	⑨예금주		* 계좌압류여부 (자필기재)
⑧계좌번호				압류중 / 정상
⑩압류방지계좌 여	부 □ 예	□ 아니≤)	* 수령계좌의 압류여부 필히 확인

- * 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 수령계좌 통장사본 첨부 * 공제금의 경우에만 압류방지계좌 사용 가능/여부 체크
- 계약 관련 기재사항 및 지급관련 확인사항

⑪계약자 성명					⑫ 공제계약번호		
⑬청구사유 발생일	20	년	월	일	⑭ 공제금 지급방법	□ 일시금	□ 분할지급

- * 분할지급 선택시 [별지 17-2호] 분할공제금 청구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 ("사망, 일반해약"시 분할지급 선택불가)
- * 분할지급 신청시에도 공제금 외의 반환금액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.
- * 문할지합 전경지에도 중세금 되의 한편금액는 할지금으로 지합합니다. * 공제금(해약환급금) 지급연도의 납부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* 일반해약 시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(16.5%, 지방세 포함) 원천징수되며,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이루어집니다. (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)

⑮ 청 구 사 유 (해당 사유에 √표시 해주십시오)						
구분	공제금	간주해약환급금	일반해약환급금			
개인사업자	 □ 폐업 □ 공동사업자의 탈퇴 □ 사망 □ 노령 (만 60세 이상,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자의 청구) 	□ 현물출자로 법인 설립 □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 전부 양도	수 있음을 안내받음 □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 (천재·지변의 발생, 해외이주,			
법인대표자	 □ 폐업 □ 해산 □ 사망 □ 노령 (만 60세 이상,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자의 청구) □ 질병,부상에 의한 퇴임 	□ 질병,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	3개월이상 입원치료·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발생, 중앙회의 해산) *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필요 (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58의3서식) □ 12개월 이상의 부금납부미납으로 중앙회에 의한 계약해지 □ 계약자의 부정행위로 중앙회에 의한 계약해지			
(B) 상속인 일부지급 청구비율 (*계약자 사망에 의한 청구시) (법정상속비율) %						

※ 이면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금/해약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
접수 시 확인사항 (√표시)	담 당	부 장
□ 청구자 본인 확인		
□ 청구자 신분증 사본		

□ 첨부서류

[공 통]

- 1. 표면의「공제금/해약환급금 청구서」
- 2.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
- 3.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(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함)
- 4.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또는 「사실확인(원)」
 - * '퇴직소득' 또는 '기타소득' 계산시 실제 소득공 제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서류 (공제금/환급 금 청구 후 5년내 제출시 세금 환급 가능)

[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의 해산인 경우]

1. 사업체의 폐업증명서(세무서발급/직인필) 또 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

[공제사유가 사망인 경우]

- 1.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(일반).가 족관계증명서(상세)(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추가)
- ※ 필요한 경우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 본증명서(일반).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- ☞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할 서류
- ①「수급권자 대표선임서」(인감날인된 것)
- ② 대표자를 선임한 자의 인감증명서(발급후 3개월 이내의 것)
- ③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본증명서(상세 또는 특정)··가족관계증명 서(상세)
-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

[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]

1. 탈퇴계약서나 동업계약철회서(탈퇴 또는 동업계약 철회 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추가) 또는 공동사 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"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"

[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]

- 1.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(병명 및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임이 기재된 것)
- 2.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

[간주해약 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 출자 폐업인 경우]

- 1.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
- 2.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
- 3. 신설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

[간주해약 사유가 배우자.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 인 경우]

- 1.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
- 2.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
- 3.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
- 4.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 계증명서(일반)

[간주해약 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]

1.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

[임의해약의 경우]

☞ [공통]란의 서류만 첨부

□ 추가서류

**청구자의 대리인이 공제금/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추가 서류

- ①청구자의 위임장(청구자의 인감 날인)
- ②청구자의 인감증명서(발급후 3개월 이내)
- ③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- ④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☞ 이 경우 청구서 첨부서류 중 청구자의 신 분증 사본은 생략

※「공제금/해약환급금 청구서」를 우편 제출하는 경우 추가 서류

- ①청구자의 인감증명서 (다만, 수령방법은 계좌 이체, 수령계좌는 청구자의 예금계좌에 한함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 ☞ 이 경우「청구서」에는 인감도장 날인 또는 자필서명